

청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693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10. 28. 체결된 69,000,000원 증여계약을 39,015,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015,92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B 사이의 2020. 6. 8. 10,000,000원, 2020. 6. 22. 5,000,000원, 2020. 10. 28. 69,000,000원에 대해 체결한 증여계약을 39,015,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20. 5. 28.경 청주시 흥덕구 C 토지 및 건물, D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E에게 4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B에게 ‘납부기한을 2021.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605,560원을 납부하고, 납부기한을 2021.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605,5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각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39,015,9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B는 위 가.항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동생인 피고의 계좌로 2020. 10. 28. 6,900만 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2020. 6. 8.자 1천만 원, 2020. 6. 22.자 5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에게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지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 31.로서 이 사건 금원의 양도가 이뤄질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20. 5. 28. 이미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이 B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피고는 B가 송금한 것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일 뿐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피고로부터 B에게 금원이 교부될 당시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도 없는 점, ②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확인서(을 제1호증)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시기가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인 2023. 4. 20.이고, 피고와 B가 남매이며, 확인자의 이름도 'B'가 아니라 'F'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20.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돈 이외에 100만 원의 예금만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으로도 42,048,420원에 달하므로,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2020. 6. 8.자 1천만 원, 2020. 6. 22.자 500만 원에 대해서도 각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2020. 6. 8.의 경우 B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6. 22.자 500만 원의 경우 위 송금 이후에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74,691,652원이 B의 계좌에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의 2020. 10. 28.자 6,900만 원 증여계약은 39,015,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9,015,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룡